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시행 2023. 9. 21.][규약 제38호, 2023. 9. 18., 일부개정]

제정 1985. 11. 16. 규약 제1호 전부개정 2015. 9. 16. 규약 제17호
개정 1986. 12. 13. 규약 제2호 개정 2015. 9. 23. 규약 제18호
개정 1988. 10. 26. 규약 제3호 일부개정 2016. 9. 9. 규약 제22호
개정 1991. 3. 18. 규약 제4호 개정 2017. 3. 18. 규약 제24호
개정 1992. 1. 00. 규약 제5호 개정 2017. 9. 19. 규약 제27호
개정 1995. 11. 7. 규약 제6호 개정 2018. 9. 12. 규약 제31호
개정 1996. 3. 19. 규약 제7호 개정 2020. 1. 17. 규약 제35호
개정 1997. 3. 20. 규약 제8호 일부개정 2023. 9. 21. 규약 제38호
개정 1998. 9. 16. 규약 제9호
개정 2000. 00. 00. 규약 제10호
개정 2005. 9. 12. 규약 제11호
개정 2006. 9. 11. 규약 제12호
개정 2010. 9. 15. 규약 제13호
개정 2012. 9. 24. 규약 제14호
개정 2013. 3. 27. 규약 제16호

전 문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자유, 진리, 봉사의 건학 정신을 바탕으로 학문 사상의 자유를 실현함과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일제의 36년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한 직후 우리 민중을 위한 대학을 만들고자 했던 당시 부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1946년 5월 부산대학이 설립되면서 민족효원의 정신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1959년 서구대신동에 있던 학교를 지금의 새벽벌로 완전히 옮겨오면서 민족효원의 정신은 새벽벌에 깃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민족효원의 정신은 불의에 지지 않고, 민주주의를 외치던 4.19혁명, 부마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지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경시하고, 학내를 병영화하려 했던 학도호국단을 완전히 폐지하고 민족효원 모든 학우들의 뜻을 모은 민주적 자치기구로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를 만들어 내었다.

부산대학교의 학생회는 개교 이래, 학교당국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기도 하였고, 정권에 의해 강제로 두 번 폐지되는 탄압을 겪으면서도, '진리와 이상으로 불타는 젊은 학도'들이 가지고 있던, 냉철한 지성과 투철한 주인의식으로 자유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상당한 노력을 해 왔고, 이 결실이 197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군사독재의 잔재인 학도호국단을 완전히 폐지함과 동시에 1985년 11월 16일, 민족효원의 모든 이들의 의지를 담은, 민주주의적 총학생회칙이 제정됨으로서, 마침내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를 부활시킨 것이다.

우리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민족효원의 이름으로 일어섰던 10·16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학생회가 되어야 한다. 권력과 자본의 위협으로부터 진리의 전당을 지켜내고 효원인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것이 이 시대의 총학생회에 요구되는 역할이다. 따라서 우리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아직 우리의 역할이 남아있음을 알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으로 새벽벌을 밝혀 나가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에 효원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고 실천적으로 나서는 총학생회를 바라는 효원인들의 의지를 모아 민족효원의 대의원들은 1985년 11월 16일 제정·공포된 부산대학교 학생회칙을 2015년 9월 16일에 전문을 포함하여 새롭게 개정하는 바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생자치의 운영과 본회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권리의 존중, 실천적 행동을 통해 권력과 자본의 위협으로부터 진리의 전당을 지켜내고 본회의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정의) 이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단과대학 학생회”란 「부산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학사과정 학생회를 말한다.
2. “독립학부”란 학칙에 따라 설치된 어느 단과대학에도 속하지 않은 학부를 말한다.
3. “학과 학생회”란 학칙에 따라 설치된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4. “각급 학생회”란 단과대학 학생회, 독립학부 학생회, 학과 학생회, 동아리연합회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사과정에 학적을 두고 수료 또는 졸업을 하지 않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③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④ 회원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 ⑤ 휴학생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참가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학생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5항각호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제7조(구성) 본회는 부산대학교 전체 학생을 회원으로 하고 각 학과 학생회를 조직 기반으로 하며 학생총회, 대의원총회, 중앙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 학과 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효원교지편집위원회를 둔다.

제8조(회기)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1. 상반기: 제71조에 따른 제1분기부터 제2분기까지
2. 하반기: 제71조에 따른 제3분기부터 제4분기까지

② 본회 집행기구와 각급 학생회는 매 회기마다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학생총회

제9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구성) 이 회칙에 의거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11조(권한 및 업무) 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한다.

제12조(의장)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총학생회장 께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3조(소집) ①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 대의원 2분의 1,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 회칙에 의거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회원 중 2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1주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학생총회의 소집은 3일 전에 의장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소집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소집하지 않을 시 대의원총회 부의장이 소집, 집행한다.

④ 소집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대의원총회 의장, 부의장이 소집하지 않을 시 대의원 중 1인이 소집, 집행한다.

제14조(의결) 이 회칙에 의거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자 전체의 6분의 1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대의원총회

제15조(지위) 대의원총회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6조(대의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직에 있는 회원은 대의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2. 단과대학 학생회장·부학생회장
3. 독립학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4. 학과 학생회장
5. 동아리연합회 회장·부회장
6.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7. 비례대표

제16조의2(비례대표)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하기구(이하 “비례대표단위”라 한다.)는 그 산하기구에 적을 두고 있는 회원 400인당 1인을 비례대표로 선거할 수 있다.

1. 단과대학에 소속된 학부·학과·전공이 단일한 단과대학 학생회
2. 독립학부·학과 학생회

② 비례대표는 각 비례대표단위의 선거규정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③ 비례대표의 임기는 해당 단위 학생회장단과 그 임기를 같이 한다는.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비례대표를 변경할 수 있다.

1. 비례대표 단위의 선거규정에 따라 비례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비례대표가 사임·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권한) 대의원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이 회칙 및 세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2. 각급 학생회 회칙에 대한 적부심사권
3.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및 특별기구 사업 계획, 예산·결산안 심의 확정권
4.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장 임명 동의권
5.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장 해임의결권 및 각종 제재권
6. 대의원의 자격심의권 및 각종 제재권
7. 각급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출석 답변 요구권 및 시정명령권
8. 특별기구 위원장 인준권
9. 특별기구 위원장 해임의결권 및 각종 제재권
10. 중앙감사위원회 감사시행 결과 심의 확정권
11. 그 밖에 대의원총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18조(의장단) ①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총학생회장이 된다.

② 각급 학생회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③ 한 회기에 2회 연속 불참한 대의원의 의결권 박탈 안건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참한 대의원은 그 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그 소명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19조(회의) 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의장단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기 진행하며 정규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대의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④ 회의소집은 안건을 명시하여 3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항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⑤ 회의는 공고 시각에 의장이 성원 보고를 한 후에 개최한다. 공고 시각이 되었음에도 의사정족수가 미달한 경우, 공고 시간으로부터 30분 이전까지 개최를 연기 할 수 있으며 30분이 초과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의장이 참석한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개최 시간을 더 연기할 수 있다.

제20조(의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해임 결의) ①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회칙을 현저히 위배하거나 직무상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해임은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하고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학생 총투표) 대의원총회는 본회의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되는 것에 대해 학생 총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중앙운영위원회

제23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시적인 의결기구이며, 최고운영기구이다.

제24조(구성)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3. 동아리연합회 회장

② 구성원이 부득이 참석이 어려울 시 그 역할을 이 회칙에 명시된 직무대행자가 대신한다.

③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회의 참관인에 의사 개진권을 부여한다.

제25조(위원장) 총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 회칙에 명시된 직무대행자가 위원장을 맡는다.

제26조(출석)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해당 회의에 대해 공결을 인정한다.

1. 각 단위 행사 참석
2. 수업과 관련된 일정
3.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유

② 공결이 아닌 그 어떤 결석사유도 무단 불참으로 간주한다.

③ 중앙운영위원의 공결이 인정될지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단위 직무대행자가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며, 직무대행자 역시 공결이 인정될 경우에만 해당 단위의 공결이 인정된다.

④ 중앙운영위원 또는 해당 위원의 직무대행자가 모두 공결이 인정되는 회의에는 해당 단위에서 참관인을 파견하여 필요한 보고사항을 보고하거나 전달사항을 전달받아야 하며 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단위에서 감수한다.

⑤ 공결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회의에 불참한 위원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불이익 예시 : 벌금, 불참 관련 공고문 게시 등

제27조(권한)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 및 대의원총회의 권한에 준하는 활동을 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전반의 문제, 학생자치에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 특별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에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특별팀을 구성할 수 있다.
3. 각급 학생회 사업 계획에 대하여 자료·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 및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4. 본회 예산 배분율을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다.
5. 그 밖의 본회 운영진반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소집) ① 정기회의는 주 1회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확대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시 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한다.

③ 필요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확대중앙운영위원회

제30조(지위) 확대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제31조(구성) ① 다음 직에 있는 회원은 확대중앙운영위원이 된다.

1. 중앙운영위원
2. 단과대학·독립학부 부학생회장
3.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②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확대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32조(출석) ① 확대중앙운영위원회에 대한 출석은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각 단위 2인의 확대중앙운영위원 모두가 불참한 경우에는 참관인을 파견하여 필요한 보고사항을 보고

하거나 전달사항을 전달받아야 하며 본 조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단위에서 감수한다.

제33조(소집) 위원장은 매월 첫 중앙운영위원회를 확대중앙운영위원회로 소집 및 진행한다.

제34조(의결) 재적단위 과반수 참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기타 업무)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에 제반사항은 제3절 중앙운영위원회에 명시된 것에 따른다.

제3장 총학생회장단

제36조(지위)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하 “총학생회장단”이라 한다)은 본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하고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를 총괄한다.

제37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단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학생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해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38조(권한대행) ① 총학생회장이 해임, 사고, 그 밖의 사유로 궐위한 때에는 부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의 모든 직무와 권한을 대행(이하 “총학생회장권한대행”이라 한다)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이 해임, 사고, 그 밖의 사유로 모두 궐위한 때에 중앙운영위원 중 1명을 총학생회장권한대행으로 호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총학생회장권한대행으로 호선된 자는 대의원총회의 신임을 얻어 취임한다. 다만, 대의원총회의 신임을 얻기 전까지는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9조(권한 및 업무) ① 본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각급 학생회를 지도할 수 있다.

② 학생총회, 대의원총회, 중앙운영위원회를 주관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장을 추천하여 대의원총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 협의할 권한을 가진다.

제40조(임기) ①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선거 직후 종강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다만, 재선거·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당선 확정 직후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② 당선인은 임기 시작까지 총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중앙집행위원회

제41조(지위)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중앙집행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각 국장이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인준받기 전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인준을 받아 활동한다.

제42조(구성) 총학생회장이 본회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각 국을 편성할 수 있다. 각 국은 국·부장 및 국·부원을 둘 수 있으며 국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인준받아야 한다.

제43조(권한 및 업무) ① 학생총회, 대의원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된 사안을 집행하고 고유사업을 진행한다.

② 각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개진권을 가진다.

③ 각 국장은 국의 업무와 관련된 산하기구의 집행 책임자들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가질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소집 시 연속 2회 불참하는 단위에 대하여 의결기구에 제재를 건의 할 수 있다.

④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학교 당국과의 협의할 권한을 가진다.

제44조(임기) 중앙집행위원의 임기는 총학생회장단과 그 임기를 같이 한다.

제5장 산하기구

제1절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

제45조(지위)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과대학 최고의 학생기구이다.

제46조(구성) 단과대학 학생회는 해당 단과대학 학사과정에 학적을 두고 수료 또는 졸업을 하지 않은 자를 회원으로 하며 그 활동을 위하여 본회에 준하는 체계를 갖춘다.

제47조(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단과대학 학생회를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해당 단위 학생회장이 궐위한 때에는 단위 회칙에 따라 권한대행자가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제47조의2(독립학부) 독립학부 학생회는 단과대학 학생회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제2절 학과 학생회

제48조(지위) 학과 학생회는 학과 최고의 학생기구이다.

제49조(구성) 학과 학생회는 해당 학과 학사과정에 학적을 두고 수료 또는 졸업을 하지 않은 자를 회원으로 하며, 그 활동을 위하여 이 회칙에 준하는 체계를 갖춘다.

제50조(회장) 학과 학생회장은 학과 학생회를 대표하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해당 단위 학생회장이 궐위한 때에는 단위 회칙에 따라 권한대행자가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제3절 동아리연합회

제51조(지위) 동아리연합회는 중앙 동아리들의 대표기구이다.

제52조(구성) 동아리연합회는 중앙 동아리들의 회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며, 그 활동을 위하여 본회에 준하는 체계를 갖춘다.

제53조(회장) 각 중앙 동아리 대표자들의 선거로 선출되며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제54조(분과장) ① 동아리연합회는 단위 회칙에 명시된 대로 분과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분과장은 본회의 대의원이 된다.

② 단과대학·학과 학생회의 당연직·비례직 대의원은 분과장이 될 수 없다.

제55조(권한 및 업무) ① 동아리활동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② 동아리활동과 관련한 학교 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회칙에 준하는 동아리연합회 회칙에서 정한다.

제6장 특별기구

제1절 총칙

제56조(목적) 특별기구는 본회 산하에 소속되어 본회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 또는 독립성을 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7조(구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다만, 효원교지편집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의 임명을 받는다.

제58조(임기) ① 특별기구 위원장의 임기는 인준된 해의 2학기 종강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기 만료 후 차기 위원장 인준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궐석 발생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대행자를 임명하며 직무대행자는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위원장으로 임명된다.

제59조(재정 및 감사) ① 본회 재정의 일부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특별기구는 매 회기마다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기구 감사는 특별기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중앙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본회 재정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한 경우
2.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요청할 경우

제60조(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특별기구 내에서 정한다.

제2절 효원교지편집위원회

제61조(지위) 효원교지편집위원회는 학생언론기구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교내의 다양한 소식을 담은 잡지를 제작 발간을 담당하기 위한 특별기구이다.

제62조(위원장)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사개진을 할 수 있고,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제63조(권한 및 업무) 교지 발간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7장 선거

제64조(선거원칙) 본회의 선거는 직접·보통·자유·평등·비밀선거로 한다.

제65조(선거권) 모든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휴학 중인 회원(다만, 학생회비를 납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2. 징계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회원

제66조(피선거권) 모든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휴학 중인 회원(다만, 학생회비를 납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2. 징계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회원
3.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

제67조(시기) ① 본회의 선거는 총학생회장단 임기만료 6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시기에 부득이하게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다음 학년도 1학기 개강 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 총학생회장단이 해임, 사고, 그 밖의 사유로 궐위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총학생회장권한대행을 호선한다.

제68조(선거관리) ① 본회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9조(위임)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재정

제1절 총칙

제70조(재정운용의 원칙) ① 재정운용은 본회 회원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정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회원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본회와 각급 학생회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계상해야 한다.

③ 본회 집행기구와 각급 학생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71조(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 학년도 2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다음 학년도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회계연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다만, 매년 선거 이후 회계운영은 차기 학생회와 함께 운영한다.

1. 제1분기: 2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제2분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3. 제3분기: 1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제4분기: 2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종강일까지

제72조(예산) ① 본회 집행기구는 매 회기마다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의원총회 소집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본회 집행기구와 각급 학생회는 매 회기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각 단위 대의원총회(집행기구일 때에는 본회 대의원총회를, 각급 학생회일 때에는 각급 학생회에 설치된 본회 대의원총회에 준하는 체계를 갖춘 각급 학생회 대의원총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회 집행기구와 각급 학생회는 각 단위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을 정규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단위 감사위원회(집행기구와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일 때에는 중앙 감사위원회를, 학과 학생회일 때에는 단과대학 학생회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73조(결산) ① 본회 집행기구와 각급 학생회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모든 경비를 기록해야 한다.

② 본회 집행기구와 각급 학생회는 지출한 모든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③ 본회 집행기구와 각급 학생회는 결산안을 매 분기 종료 후 14일 이내에 각 단위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4조(학생회비) ① 학생회비는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자치활동을 위하여 회원이 납부한 것으로 본회

의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학생회비는 총학생회비·단과대학 학생회비·학과 학생회비를 모두 포괄한다.

③ 학생회비 납부는 정규학기 등록금 납입고지서와 함께 교부되는 학생회비 납입고지서를 따르거나 학생회비 배분용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총학생회장에게 학생회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학생회비 환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학생회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75조(위임) 그 밖에 재정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감사

제76조(감사) 본회 집행기구와 각급 학생회는 회계운영과 업무에 대하여 각 단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77조(중앙감사위원회) ① 본회는 감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감사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8조(위임)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감사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9장 규약

제1절 회칙개정

제79조(발의) 대의원총회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그 개정안을 대의원총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회원 1,000명 이상의 서명에 의한 발의
2. 중앙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제80조(공고) ① 회칙개정이 발의되면 대의원총회 의장이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고문을 공고해야 한다.

1. 발의 일자
2. 발의자 명단 및 직책
3.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② 대의원총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회칙 개정안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고문을 공고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일시
2. 신/구조문 대비표

제81조(의결) ① 회칙 개정이 발의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대의원총회 개최에 앞서 회칙 개정을 위한 개정안을 상정 및 심의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회칙개정안은 회칙 개정안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제82조(공포)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3일 내에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공포하여야 한다.

제83조(효력)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회칙 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2절 세칙

제84조(목적) ① 본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정 및 개정한다.

② 회칙에 위반되는 세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으며 위반되는 부분은 반드시 세칙 개정을 통하여 세칙에 반영해야 한다.

제85조(제정 및 개정) ①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②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관련 회의에서 확정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3절 규칙

제86조(목적)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한다.

1.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할 경우
2.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할 경우
3. 그 밖에 의결기구·집행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경우

② 회칙이나 세칙에 위반되는 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위반되는 조항은 반드시 개정을 통하여 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제87조(제정 및 개정)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개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감사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개정하는 때에는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0장 징계와 제재

제88조(발의)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나 회칙을 위배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발의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9조(시행)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검토하여 명백히 회칙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에 징계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징계 및 제재 발의가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건일 경우, 징계 및 제재에 관한 심의와 의결은 당사자를 제외한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한다.

③ 징계 및 제재는 개인에 대한 건과 단체에 대한 건으로 구분한다.

④ 대의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각 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권고
2. 선거권·피선거권의 박탈
3. 대의원총회에서 사과 권고
4. 대의원 자격 정지(중앙운영위원인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자격 또한 정지한다)
5. 대의원 제명(중앙운영위원인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에서도 제명한다)
6. 회원으로서의 제명

⑤ 대의원이 아닌 회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각 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권고
2. 선거권·피선거권의 박탈
3. 회원으로서의 제명

⑥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각 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권고
2. 예산의 삭감 및 몰수. 이 경우, 그 비율과 사용처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3. 특정 사안에 대한 활동 금지
4. 기구장에 대한 사퇴 권고
5. 특별기구 자격 박탈

부 칙(제17호, 2015. 9. 16.)

제1조 본회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 및 관례에 따르되, 반드시 회칙 개정을 통해 회칙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2조 본회칙에 명시된 기구는 본회칙의 규정을 받는다.

부 칙(제31호, 2018. 9. 12.)

제1조 본회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별지를 기준으로 하되, 별지에 명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확대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제35호, 2020. 1. 17.)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전기컴퓨터공학부 정보컴퓨터공학전공 재적생에 대한 조치) 이 회칙이 시행될 당시의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정보컴퓨터공학전공 재적생은 2026년 2월까지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정보컴퓨터공학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의원 의석조정) ① 이 회칙이 시행될 당시 공과대학 정보컴퓨터공학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공과대학 정보컴퓨터공학부 비례직 대의원은 각각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정보컴퓨터공학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정보컴퓨터공학부 비례대표로 본다.

② 이 회칙이 시행되는 때에 대의원총회는 다음의 의석을 둔다.

1. 정보의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부학생회장
2.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의생명융합공학부 학생회장

제4조(중앙운영위원회 및 확대중앙운영위원회의 의석 조정) ① 이 회칙이 시행되는 때에 중앙운영위원회는 정보의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의 의석을 둔다.

② 이 회칙이 시행되는 때에 확대중앙운영위원회는 정보의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 정보의생명공학대학 부학생회장의 의석을 둔다.

③ 정보의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정보의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 · 부학생회장의 직은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 중에서 2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정보컴퓨터공학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2.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의생명융합공학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부 칙(제38호, 2023. 9. 21.)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6조제2항제3호, 제21조제2항제3호, 제40조제7항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2. 제4조제4항, 제21조제2항제4호, 제40조제7항제7호라목 중 ‘학과(부)·전공 학생회’를 ‘학과 학생회’로 한다.
3.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각급 학생회 가운데 회장단 선거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부실한 각급 학생회는 이 세칙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학과 학생회가 그 소속 단과대학 학생회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정을 폐지한다.

1.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 운영세칙」
2.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 사무처 운영규칙」

제4조(의안의 정리)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회칙이 공포되기 전까지 회칙에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자구·숫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총회가 승인한 취지나 이 회칙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

민족효원 학생총회 소집 공고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 장 절 조에 의거하여
년 민족효원 학생총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0요일 00시, (장소)

1. 안건

가. 특별안건

1.

나. 보고안건

1.

다. 인준안건

1.

라. 논의안건

1.

마. 기타안건 : 추가 회원의 발의가 있으면 상정되어 논의될 수 있음

2. 유의사항

- 모든 참석 회원은 부산대학교 학사과정 재적생임을 증명하기 위한 **학생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민족효원 학생총회의장
부산대학교 제대 총학생회장

0 0 0

민족효원 대의원총회 00회의 소집 공고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 장 절 조에 의거하여
년 0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 00회의 소집을 공고합니다.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0요일 00시, (장소)

1. 안건

가. 특별안건

1.

나. 보고안건

1.

다. 인준안건

1.

라. 논의안건

1.

마. 기타안건 : 추가 대의원의 발의가 있으면 상정되어 논의될 수 있음

2. 유의사항

- 모든 참석 대의원과 참관인은 부산대학교 학사과정 재적생임을 증명하기 위한 학생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참석 대의원의 회의장 출입은 모두 기록됩니다. 또한, 출결사항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년 월 일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의장
부산대학교 제대 총학생회장

0 0 0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개정안 발의 공고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 장 절 조에 의거하여 중앙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이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발의 일시 : 년 월 일

2. 발의자 명단 : 중앙운영위원장(총학생회장) 000 외 0명 (00/00, 00%)

총학생회장 000, 부총학생회장 000, 00대학 학생회장 000, 00대학 부학생회장 000, 00대학 비상대책위원장 000, 00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000

3. 회칙개정안의 요지

학생회비에 대한 내용 정확히 명시 / 감사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개정 및 기타 서식 제정으로 인해 생기는 회칙과 부딪히는 부분 수정 / 기타

년 월 일

민족효원대의원총회의장
부산대학교 제대총학생회장

000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개정안 공고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 장 절 조에 의거하여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1. 대의원 총회 일시 : 년 월 일 시

2. 신/구조문 대비표

기존	개정 및 신설
개정 이유 :	
개정 이유 :	

년 월 일

민 족 효 원 대 의 원 총 회 의 장
부 산 대 학 교 제 대 총 학 생 회 장

0 0 0

문의 및 연락 : (전화) 051)510-1925~6, (E-mail)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개정안 공포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 장 제 조에 의거하여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개정 취지

--

2. 의결 결과

장 개정안	재석인원 명	찬성 : 명	결 과
: 가결			
장 수정동의안	재석인원 명	찬성 : 명	결 과
: 가결			
장 개정안	재석인원 명	찬성 : 명	결 과
: 부결			
부칙 개정안	재석인원 명	찬성 : 명	결 과
: 가결			

3. 총학생회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기존	개정 및 신설
개정 이유 :	
개정 이유 :	

년 월 일

민족효원대의원총회의장
부산대학교 제대총학생회장

0 0 0